

AI시민행동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6. 09. 17.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예외주의 반대**
22대 후반기 국회에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발행일 | 2026년 9월 17일 (목)

발행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

목차

목차	2
들어가며	3
[입법과제1] 인공지능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6
[입법과제2]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11
[입법과제3]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14
[입법과제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8
[입법과제5]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22
[입법과제6]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27
[입법과제7]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30
[입법과제8]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34
[국감정책과제1]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45
[국감정책과제2]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48
[국감정책과제3]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	51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지난 3월 31일 발족하여, 녹색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5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이라는 이름하에 규제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을 균형있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지난 7월 오픈AI가 개발한 AI모델이 격리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타기업에 침입 비공개 데이터를 해킹하는가 하면, 최근 9월 8일에는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온라인 테스트 '캡차'(Captcha) 게임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앤트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6개월 안에 에이전트 AI가 인터넷을 장악하고 수천억 달러 규모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AI 기업들이 외부 평가자를 도입해야 하고, 안전기준을 만들고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이전에, AI가 야기한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통제가 가능한 AI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와 대비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중 AI 산업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내지 규제무력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상반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유례없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피지컬AI법,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노동, 보건의료 분야에 AI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폭 완화(사실상 규제 무력화)가 아니라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인공지능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의 행보는 이에 호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많이 빠져있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금지 AI 규정이 없으며, 실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운용자 개념이 없어 적정한 책임에서 빠져있고, 무엇보다 사회 전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 및 피해 구제절차가 없어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활용 무기 개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방AI 관련 법안들은 신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안전장치, 민주적 통제,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별되는 개인정보 원본을 AI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도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계 유례없을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22대 국회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정보주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과연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전력과 용수 등 자원을 필요로 하는 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AI데이터센터법은 정작 실질적 이해 관계자인 지역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평가나 정보공개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성형AI를 넘어 피지컬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동환경 역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임에도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마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고 있을 뿐 인간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 등도 없습니다.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와 심지어 유전정보조차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각 분야별 구축해 놓은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생략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 수립 및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료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리의 제한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민감한 개인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상업적으로 넘기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정부의 ‘AI기본의료’가 안전성·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의학의 근본 토대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AI 전환기 노동현장에서 성별 편향과 기존 차별의 재생산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고용과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의 성별 편향 및 기존 차별의 재생산, 과소 대표된 데이터에 근거한 AI 정책, AI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확산 등에 대한 대책은 AI 전환기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 8가지 입법과제와 3가지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8가지 입법과제

- 인공지능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인공지능기본법」개정
-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3가지 정책과제

-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

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지금, 더 늦기 전에 AI 전환기 사회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도전과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AI 만능주의, AI 예외주의 기조에 제동을 걸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과제1] 인공지능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9월 8일 미국의 오픈AI의 프런티어 AI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사람과 로봇(자동화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캡차(CAPTCHA)' 게임의 48단계를 모두 통과하였다고 함. 이제 AI는 챗봇, 의료 진단, 자율주행차, 대출 및 자산상담, 채용, 인사평가, 노무관리 등과 최근 에이전틱AI와 피지컬AI를 넘어 조만간 인류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음. 그럼에도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 중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저히 부족함.
- 우선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자(운용자)는 영향받는 자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단지 '이용자'에 해당할 뿐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서 수범주체가 되지 못하여 아무런 책무가 없게되는 공백이 존재함.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운용자 사이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실제 준수해야 할 책무(투명성,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의 범위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실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율이 없는 상황임.
- 무엇보다 실제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정의규정만 있을 뿐 권리 및 피해구제 절차가 인공지능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또한 ▶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금지해야 할 인공지능 정의가 없고,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기본법인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생성, 패턴 인식, 번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AI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인공지능사업자와 ‘운용자’ 개념 추가 규율(제2조 개정)

- 인공지능기본법 상의 수범주체는 현재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실제 영향받는 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시스템 운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병원의 경우, 병원은 이용자에 해당하여 그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자를 별도로 ‘운용자’로 정의하고, 운용자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의무,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책무, 사회적 가치 규정(제 3조, 제27조)

-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인공지능이 기존의 성차별과 편견을 답습하거나 확대·재생산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3) 금지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 추가

- EU AI Act 경우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AI를 '용인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으로 규정하고, 개발·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금지 대상에는 사람의 잠재의식을 악용해 행동을 조작하거나 성별, 장애 등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 프로파일링만을 통한 범죄 예측 AI, 무차별 얼굴 이미지 수집을 통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됨. 또한 직장·교육기관에서의 감정인식 AI와 생체정보를 이용해 인종·종교·정치적 성향 등 민감정보를 추론하는 AI,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4) 투명성 규정 정비(제31조)

- 투명성 내용에 생성형AI와 고영향AI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의도된 인공지능시스템’ 포함.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AI’의 ‘투명성’은 별도 책무 조항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고지의무도 고영향 인공지능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생성형AI 개발사업자에게는 영구적·불변적 기계판독 설계 및 개발 의무를 부과하고,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하여는 운용자에게 가시적 고지·표시의무 부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세분화 및 실질화. 운용자에게는 표시 유지 및 훼손금지 의무 부과.

5)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정비(제34조, 제35조)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 관련 ① 성별 편향 및 차별에 대한 평가와 시정조치 규정 ②로그 생성·보관·관리 의무 신설.
- 운용자 개념을 신설하여 운용자의 기본책무로 ①기술적·관리적 조치 ②로그 보관의무 ③주기적인 모니터링 의무 ④위험발생 시 즉시 개입의무 및 사업자와 행정당국 통지 의무 ⑤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 도입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별도 규정 규정.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노력’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운용자 개념 도입을 전제로 영향평가의 수범 주체를 운용자로 하고, 개발사업자에게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무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절차를 도입함. 영향평가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성별영향평가(성별통계, 성별 수해분석 등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반드시 포함.
- 영향받는 자의 권리(설명 요구 및 거부권, 인적개입 요구권 등) 및 피해구제 규정을 도입

6) 고성능 인공지능 관련 규정 정비(제32조)

- 인공지능 모델 개념을 정의하여 ‘인공지능시스템’과 구분함.
- 제32조의 의무 주체에 대하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에 미달하더라도 그 성능의 위험성이 높은 모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규정.
- ‘범용 인용지능’ 개념을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범용 인용지능 모델 제공자는 모델의 구조·학습과정·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학습데이터에 관한 일정한 정보의 공개,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책 마련, 에너지 사용량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장선미 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교수>

7)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및 성별균형 보장 (제7조, 시행령 제4조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매우 미흡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정부 위원회 구성 기준에 맞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개정해야 함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② 개정(특성 성이 10분 6 초과하지 못하도록)
 -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서 특정한 성이 10분의 6 이상이 될 수 없으며”로 수정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부 위원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추가 (시행령 제4조에 성평등가족부 추가)

8)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규범과 원칙 마련 (제3조, 제6조 등)

- 인공지능 진흥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규범적 균형을 위해 목적 조항, 기본원칙 및 국가 책무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추가함.
-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이 환경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 및 평가함.

- 국가 거버넌스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관리 및 지속가능한 운영이 다뤄지도록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200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 주요내용
 -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관리·감독 의무 부과함 (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약평
 -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임.

2) [222005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 주요내용
 -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
- 약평
 -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

4. 소관 상임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

5. 담당/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02-522-7284)

[입법과제2]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4년 12월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안에는 국방안보 관련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국방분야 AI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군사AI 관련 법안「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 「소프트웨어중심무기체계 특별법안」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안들을 살펴보면 군사 영역에 AI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쟁점은 제대로 담고있지 않고 신속한 전력화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당 법률은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인만큼 신중한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사살 여부를 판단하는 AI를 실제 운용하기도 했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 표적 식별에 AI를 활용했으며, AI가 식별한 표적을 검증 없이 살해함.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도 AI 기술이 활용되었음.
-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고 있음.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여야가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은 국방인공지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AI를 적극 도입 활용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법 준수 의무 등 기본원칙 부재 ▷국방 AI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부재 ▷‘인적 개입’ 규정의 모호성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결여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개발 및 특례 조항의 위험성, 금지·제한하는 규정 부재,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책임 공백’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짐.

- 한국 정부는 군사 인공지능 사용시 유엔헌장과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사회 합의에 동조해 왔고 무력사용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통제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는 모든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공동 주도하기도 했음. 하지만 이처럼 주요 군사AI 법안들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하거나 결의한 안전장치,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신속한 개발과 획득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2. 세부 과제

1) 국제법 준수 의무 등 기본원칙 수립

- 목적을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인간 통제’와 ‘국제법 준수’로 수정. 이로써 AI 무기체계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인 보호와 인권 존중에 이바지하도록 방향을 수정.

2) ‘인적 개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명문화

- 단순한 ‘인적 개입’을 넘어 AI 체계와 임무 특성, 전장 환경, 민간인 위험도 등 맥락에 따라 인간 통제 수준을 결정하는 ‘맥락에 적합한 인간의 책임있는 판단과 통제’를 기본방향에 추가하고, 인간 통제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법률에 명문화 함.
- 인간에 대한 살상 결정을 기계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명시.

3)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

- 군, 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위원회 구성을 명시해야 함.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위원회 기능을 국방인공지능의 위험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개입 도입 및 운용 현황’과 위원회 활동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국회 요구 시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금지·제한하는 국방 AI 규정 신설

- 금지대상, 고위험, 제한된 위험 등 위험도(risk-based)에 따른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예측불가능한 자율무기와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대인 자율무기의 연구, 개발 및 운용을 금지해야 함.

5)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책임 공백'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안전성 확보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전 인증이 없는 시스템 운용은 금지함. 인공지능 오작동 또는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 범위·기준을 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후조사 가능토록 전 과정에서 기록 보존과 문서화 의무 명시함.
-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와 책임 추궁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16355] 국방인공지능법안 (유용원의원 · 부승찬의원 등 33인)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에서 이법의 목적을 '국방력 증진과 국가안보 강화'에 있음을 전면내 내세우고 핵심 개념을 규정, 기본방향을 제시함. 제2장 국방인공지능 추진체계(제5조~제13조)에서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규정하고, 제3장 국방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특례(제14조~제22조)에서는 '신속전력화', '기술혁신성' 명분으로 규제나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명문화함. 제4장 국방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제23조~제26조) 조항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닌 자율적인 규약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지원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제5장 보칙(제27조~제28조)과 제6장 벌칙(제29조~제30조)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약평
 - 국방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공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필요성은 존재.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국방인공지능을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내용은 부재하고 사실상 국방인공지능 개발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산업 육성법'에 가까워 매우 우려스러움.

4. 소관 상임위 : 국회 국방위원회

5. 담당/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입법과제3]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AI 관련 법안「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 「소프트웨어중심무기체계 특별법안」등을 살펴보면 주로 무기체계 도입 및 획득 과정에 AI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쟁점은 제대로 담고있지 않고 신속한 전력화에만 방점을 두고 있음. 특히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은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 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명분으로 사전 인증 제품의 시험평가 생략, 후속 단계 수의계약 체결 등 「방위사업법」상 주요 검증·경쟁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여야 공동발의안인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은 또 다른 여야 공동발의안인 국방인공지능법안 제14조가 하위 법령으로 백지 위임했던 AI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의 특례를 별도 법률로 실체화하고 구조화한 후속 입법임. 문제는 본 법안 제3조에서 타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향후 국방인공지능법안에 엄격한 인간 통제 및 안전 조항이 담기더라도 무기 획득 단계에서는 본 법안이 법리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국회는 2026년 3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8월에는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격상시킨 바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부대 실사용 평가 대체와 사전 인증을 통해 국회가 스스로 구축한 법정 시험평가 체계 자체를 비껴가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본 법안은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속성을 명분으로 기존의 투명성 절차를 축소·생략하고 이를 대체할 통제 장치는 두지 않았음.
- 위와 같이 법안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안」과 본 법안을 반드시 병합 심사해야 함. 2026년 4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자 본인과 소위원장이 요구·제안했던 입법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적용 범위와 인증 기준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해야 함.

2. 세부 과제

1)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한 조항 삭제

-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은 일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 '첨단전력체계'로 지정되기만 하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인공지능법안」을 우회해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특례 기준을 위임한 국방인공지능법안에 아무리 강력한 인간 통제 및 안전 조항을 담더라도 무기 획득 단계에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함. 따라서 해당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함.

2)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율 원칙을 검증절차에 적용

-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에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을 통합하면서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통제를 두지 않아 종전에 무기체계에 적용되던 엄격한 검증절차가 전력지원체계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음.
- 지난 8월 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적용한대로 위험도에 기반한 차등 규율 원칙을 무기체계 획득 절차 전반으로 확대 적용토록 수정해야 함. 특히 '고위험 첨단전력체계'로 명확히 정의하고 시험평가 생략, 인증 완화, 배치 전 평가 면제, 초기 시제품 선배치, 면책 규정 적용을 엄격히 배제토록 해야 함.

3) 법정 시험평가와 검증 절차 무력화 방지

- 본 법안은 연구개발 시 법정 시험평가를 부대의 실사용 평가만으로 대체하고(제16조 제4항), 직구매 시 사전 인증을 이유로 시험평가는 물론 배치 전 실사용 평가까지 면제하고 있음. 이처럼 시험평가 또는 실사용 평가를 대체·면제토록 하는 것은 알고리즘 편향성 및 오분류 위험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검증관리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임.
- 시험평가 실시 간주 조항을 삭제하고, 부대 실사용 평가를 법정 시험평가를 보완하는 보조적 절차로 규정해야 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사전 인증 제품 구매 시에도 배치 전 실사용 검증 절차를 유지토록 해야 함. 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및 주기적 재평가 의무를 명시해야 함. 또한 부대 평가 주체에 소요군과 분리된 검증 주체(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AI 탑재 무기체계의 평가 항목에 오분류율, 편향성, 민간인 구별 성능을 필수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함.

4) 국회 통제 및 투명성 강화토록 수정

- 국회 보고 의무 등 국회가 첨단전력사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다른 법과 비교해 부재한 상황임. 특히 방위사업계약의 임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핵심 통제 조항인 방위사업법 제46조의5를 전체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 통제와 재정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도 전면 무력화됨. 또한 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 대한 독점적 특례가 다수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군 차원의 검증 또는 수정 권한을 제약받을 우려도 낡음.
- 대형 사업(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분석·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 및 반복적 개발 주기 3년 제한 규정을 포함해야 함. 「방위사업법」 제46조의5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함. 지식재산권 업체 단독 소유 대상에서 다중 데이터 통합·분류 시스템 및 알고리즘 결과물은 엄격히 제외해야 함.

5) 군사 목적의 감시·식별·예측 기술의 치안 및 행정 분야 이전 금지

- 본 법안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감시·식별·예측 기술이 국내 치안 및 행정 분야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단순히 장비를 이관하는 것을 넘어, '적과 아군' 또는 '위협과 비위협'을 가르도록 설계된 군사적 분류 기준 및 데이터 알고리즘이 민간 행정에 적용될 때 초래될 사회적 파급력과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해 본 법안은 어떠한 검토도 담지 않음.
- 군 밖의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첨단전력체계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전면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 감시·식별·예측 기능이 포함된 체계를 공공기관 및 치안기관으로 이관·통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대상 기관 및 품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야 함.

6) 국제법상 법적 검토 의무와 책임·구제 규정 마련

- 국방인공지능법안에 오작동이나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 책임 귀속과 피해 구제 장치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본 법안은 절차 준수자에 대한 징계·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 및 국제인도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 제24조 제2항의 위험 검토 요건에 '국제법 적합성 검토' 및 '민간인·전투원 구별 성능 검증'을 명시하고, 고위험 첨단전력체계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 적용을 엄격히 배제해야 함. 국제법 적합성 검토 절차를 법률로 신설하여, 사전 인증목록 등재 전 및 최초 배치 전에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국방첨단전력사업을 즉시 제외하고,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들을 본 법안과 병합 심사하여 우회적 규제 완화를 차단해야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20937]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 (김병주의원 유용원의원 등 16인)

- 주요 내용
 - 기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한 '첨단전력체계' 범주를 신설하고(제2조), 국방부장관 소속 첨단전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4조·제6조). 핵심 기능 위주의 초기 시제품을 우선 배치한 뒤 개량하는 유기적 순환개발(제17조), 부대 실사용 평가로 법정 시험평가 대체(제16조), 사전 인증 제품의 즉시 구매(제13조), 후속 단계 수의계약 체결(제9조), 개발 결과 지식재산권의 업체 단독 소유(제20조), 절차 준수 시 면책 부여(제24조) 등 방위사업법상 주요 검증·통제 절차를 대폭 생략·면제하는 특례를 골자로 하며, 본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 약평
 -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적용 제외함에 따라 국방 첨단기술 체계에 대한 규율 규범의 정립 필요성은 존재함.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안전성 검증, 인간 통제, 국제법 준수, 책임 귀속에 대한 규범은 전무한 채, 오직 무기 획득의 신속화와 절차 간소화, 관련 업체 및 운용자에 대한 면책에만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음. 현행 「방위사업법」의 원칙적 검증 절차를 배제하고 타 법률에 대한 법리적 우선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특례·면책 전용법'으로 작용할 위험이 큼.

4. 소관 상임위 : 국회 국방위원회

5. 담당/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입법과제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향상을 위해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률임. 이제 AI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식별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해 인공지능 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됨. 실시간으로 개인의 일상, 위치, 행동 패턴뿐 아니라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까지 수집되고 디지털화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나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확립된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도 반함.
- 맞춤형광고는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검색, 구매 이력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것임. 특정 개인과 연결성이 강한 모바일식별번호, IP주소 등은 그 자체는 기기식별번호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함. 이와 같은 식별자들을 이용하여 수집한 행태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열람, 처리정지 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AI 시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차별 등의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인지 불분명함.
- 빅데이터 기업 등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AI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개인정보침해 위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의무는 미비함.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고지받을 권리도 충분하지 못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어, 법률이나 정당한 이익 등 동의 외의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또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 처리목적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스팸 문자와 메일들을 받아도 내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정보 통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2. 세부 과제

- 1) 프로파일링, 기기식별자 통한 행태 정보 수집 규율 (제2조 개정)
 - 광범위하고 실시간으로 가능한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규율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정의 조항을 신설함.
 - 특정 개인과 연결성이 강한 모바일식별번호, IP 주소 등 기기식별자는 언제든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식별번호, IP 주소, 광고식별자 등 온라인 기기식별자를 개인정보로 정의에 신설함.
- 2) 사전·사후 영향평가 민간기업으로 확대 (제33조 개정)
 -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영향평가 의무를 플랫폼 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하여 사전, 사후적으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3)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실효성 확보 (제15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고지받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인 제3자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부과함.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람의 대상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 4)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하는 제28조의12제1항 등 폐기
 -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기해야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 1) [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이 분석되는 등 프로파일링이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링을 법률에 명확히 규율
-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함.
-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플랫폼 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
-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맞게 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By Default)을 하도록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약평
 - 인공지능의 성능개선, 기술향상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얼굴, 음성,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법안
 - 긍정적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2) [2212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 주요 내용
 -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임을 명시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포함.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함
- 약평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는지, 즉 동의에 의해 수집하는 것인지,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지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법률에 따라 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인지 등도 알기 어려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가 되는 고지받을 권리와 열람권을
확대한 법안.

-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4. 소관 상임위 : 국회 정무위원회

5. 담당/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pil@pspd.org)

[입법과제5]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이고, 데이터센터 자체뿐 아니라 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 변전소, 용수공급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도 필요함. 따라서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단순한 산업 인프라 확충의 문제가 아님. AI 산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전력과 물을 추가로 사용할 것인지, 그 수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문제임.
- 그러나 2026년 6월 제정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융자·투자·보조, 인허가 일괄처리와 각종 특례까지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한 기준보다 필요한 전력과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사업을 얼마나 빨리 추진할 것인지가 앞서 있음.
-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해야 할 우선 수요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임.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전력과 용수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 변전소, 용수공급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그런데 특별법은 필요한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센터의 수요 자체가 적정한지, 해당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은 두지 않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정책과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법에는 데이터센터 확대 규모를 국가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먼저 확정하고 그만큼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움. AI 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에서 그 규모를 검토해야 함.

- 특히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잘못된 규제완화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는 것과 대규모 전력수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수도권에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없음. 비수도권이라도 계통 여력이 부족하면 추가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필요할 수 있음. 지역 분산을 추진하려면 평가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통 여력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규모를 정해야 함.
- 용수도 마찬가지임. AI 데이터센터는 냉각 등을 위해 상당한 양의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특히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용수수요를 단순히 산업용수 공급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됨. 지역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생활·농업·산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역의 물 이용 여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를 조정할 기준은 두고 있지 않음. 물이 부족하면 새로운 공급시설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야 함.
-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에 비해 정보공개도 부족함. 특별법은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공급시설과 재정까지 지원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전력과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신규·증설로 얼마나 더 사용할 것인지 정도는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확대가 가져올 영향을 판단하고 수요를 관리할 수 있음.
-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제한 없이 늘려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재생에너지 역시 발전시설과 송전망, 입지가 필요함.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공급할 것인가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자체를 얼마나 줄이고 관리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데이터센터 규모와 입지를 전력·기후·물관리 계획과 연계(제5조 개정)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수요를 먼저 전제하고 필요한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데이터센터의 확대 규모와 입지를 국가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별 전력계통 여력과 용수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함.
-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수요 전망과 수요관리 목표를 포함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등과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함. 데이터센터 확대계획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전력과 물을 사후에 확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
- 개별 데이터센터의 입지도 해당 시설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됨. 데이터센터 때문에 추가 발전설비와 송전망, 변전소, 용수공급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함. 지역의 전력과 물 여건을 넘어서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거나 입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함.

2)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조항 폐지(제19조 폐지)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두고 있는 특별법 제19조를 폐지해야 함.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함. 그러나 이를 이유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사전 검증까지 완화할 이유는 없음.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님.
- 오히려 지역별 전력계통 여력을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함. 데이터센터 입지로 추가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3) 전력·용수 사용 공개와 수요관리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AI 데이터센터는 실제 전력·용수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신규 건설이나 증설의 경우 예상 전력·용수 수요와 공급계획도 사업 추진 전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시설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업자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야 함.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수요 관리, 물 사용 절감·재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생에너지 직접공급 특례를 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됨.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조달 여부와 별개로 총 전력수요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함.
- 4)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 전력·물사용효율 지수,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AI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시 사전 정보 공개,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필수 절차로 제도화 해야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 전력·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사업자에 대한 융자·투자·보조
-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공급 특례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 약평

-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를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공급해야 할 수요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임. 전력·용수 공급시설과 재정지원, 인허가 특례는 구체적으로 두면서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에 따른 전력과 물 수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음.
- 특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둔 것은 잘못된 규제완화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는 것과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검증을 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수도권에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없음. 비수도권의 전력계통 여력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음.

- 재생에너지 직접공급 특례 역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자체에 대한 대책은 아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AI 산업도 예외일 수 없음.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자체를 관리해야 함.
- 용수도 마찬가지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에 앞서 지역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물이 부족하면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줄이거나 입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 법은 일부 환경규정을 추가하는 정도로는 부족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수요를 우선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자체를 바꿔야 함.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폐지하고,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를 국가 전력수급·온실가스 감축·물관리 계획과 연계해야 함.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에너지·물 수요관리도 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히 해야 함.
-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담당/문의 : 녹색연합(02-747-8500, greenkorea@greenkorea.org)

[입법과제6]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수단·드론·스마트제조설비 등의 형태로 현실의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직접 행동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성형 AI와 차이가 있음. 피지컬 AI 기술은 오작동이나 잘못된 판단이 곧바로 이용자·노동자·보행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현실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업진흥보다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함. 특히 안전 관련 의사결정의 추적가능성과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의 안전의 관점에서, 피지컬 AI의 상용화는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위험이 사전에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EU의 경우, 피지컬 AI의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AI 규제와 제품안전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EU「AI Act」는 제품의 안전구성요소이거나 그 자체가 제품인 AI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규율하고,「기계류 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은 자율 이동 기계와 머신러닝 기반 안전기능에 대하여 위험관리와 안전설계를 요구함.
- 이와 달리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피지컬 AI의 위험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규율보다 산업 육성과 신속한 실증을 위한 지원·규제완화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고위험 피지컬 AI에 대한 의무적 사전 안전검증체계도 부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특례 인정 및 정보주체와 제3자 권리 보호는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 하에 중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음. 중대한 위험을 사전에 발견 및 통제하는 체계와 사고 발생 시 책임배분 및 조사, 피해구제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즉,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피지컬 AI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규제완화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예방·통제하기 위한 규율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피지컬 AI 관련 법률안은 단순히 산업 육성과 규제특례라는 기본방향 위에 안전장치를 일부 추가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에서 인간의 생명·신체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므로, 위험수준에 따른

의무적 사전 안전검증, 인간의 실질적 통제가능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규제특례의 명확한 한계,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 및 책임·피해구제체계가 법률상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법제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법률임.

2. 세부 과제

1) 인권 보장 체계 확보

- 피지컬 AI 산업진흥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의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및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의 정보·참여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 피지컬 AI가 국민의 생명·신체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간 중심의 개발·이용 원칙을 법률의 목적과 국가책무에 명시해야 함.
- 피지컬 AI가 현실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제3자의 얼굴·음성·행동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최소 수집, 수집대상·장소의 제한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마련해야 함.
- 피지컬 AI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주민과 노동자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피지컬 AI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의 알 권리·참여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이 명시되어야 함.

2) 인간 통제에 기초한 안전 확보

-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하고 물리적 행위를 수행하므로, 안전성은 단순한 기술적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작동에 개입·중단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제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와 의무적 사전 안전성 검증, 인간의 개입·정지 권한, 사고의 기록·보고 체계 등 사전적·인간중심적 안전체계가 마련돼야 함.
-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은 규제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보다 안전 규제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함. 또한 피지컬 AI 관련 사고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 제조자·개발자·운영자의 책임관계, 사고원인 조사, 작동기록의 보존, 피해자의 관련 정보 접근 및 실효적인 손해배상까지 연계되어야 함.

- 피지컬 AI의 안전성은 사업자가 기술적 성능을 인증받는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의 사전평가, 인간에 의한 감독·개입·정지, 중대한 위험 발생 시 실증·운영 중단, 사고의 기록·조사, 책임규명과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3) 별도 특별법 제정보다 인공지능기본법으로 통제

- 이러한 충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진흥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인공지능기본법」,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개별 산업법을 통해 위험을 우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19104]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피지컬AI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시범지역 지정,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됨.
 -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특례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
 - 규제특례 신청 후 60일 이내 별도 거부 통지가 없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피지컬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함.
- 약평
 - 피지컬 AI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예방·통제하기 위한 규율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폐기해야 하는 법안.

4.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담당/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pil@pspd.org)

[입법과제7]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내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채용 분야임.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2024년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채용동향·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40.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의 25.4%보다 15.3%p 증가한 수치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2025년 AI 채용 관련 정책동향 분석에서 이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국내 기업의 AI 채용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이 재직자의 성과평가와 인사관리, 작업배정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노동관리 문제를 채용단계만의 문제로 다루기 어려움. 이러한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노동자가 자신이 어떠한 데이터와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고, 편향된 데이터나 평가기준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받을 위험도 발생시킴. 특히 노동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정보·권한의 비대칭성이 크므로 일반적인 AI 이용관계보다 강화된 정보권,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 등의 보장이 필요함.
- EU「AI Act」(Regulation (EU) 2024/1689)는 제6조 제2항 및 Annex III 4에서 채용·선발, 승진·근로계약관계 종료, 업무배정 및 근로자의 성과·행동 모니터링·평가 등에 이용되는 일정한 AI 시스템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인간의 감독 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EU+「플랫폼 노동 지침」(Directive (EU) 2024/2831) 제9조 및 제10조는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과 인간에 의한 감독·영향평가를 규정하고, 감독 담당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근로자법」(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4조 제4항 d호는 기업위원회(comité de empresa)에 대하여 근로조건, 고용에의 접근 및 고용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매개변수, 규칙 및 지침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프로파일링도 포함하고 있음.

- 이처럼 해외 입법에서도 노동영역의 AI·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별도의 보호체계가 마련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노동 분야 AI 도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한국 또한 별도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근로기준법」상 규율대상을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으로 확대

-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함. 이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을 생산한 ‘방법’을 스스로 추론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는 OECD 개념과 차이가 있음. 즉, 단지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위가 좁고 불명확해, 통계적 모델이나 자동화된 점수화·평가 시스템 등이 제외될 수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을 개정해야 함과 별개로, 노동 분야 AI를 규율하게 될 근로기준법에서는 AI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술이 엄밀한 의미의 AI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알고리즘이나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자동화된 평가·점수화 시스템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율대상을 보다 기술중립적인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자동화된 노동감시 및 정보처리의 금지영역 설정

- 감정·심리상태 추론이나 노동조합 활동 감시 등 노동관계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정보처리의 금지기준이 마련돼야 함.
-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및 노동 3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정보처리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처리 등의 제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근로자대표의 집단적 알고리즘 정보권 및 참여권 강화

- 노동자의 정보권,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 등의 보장이 필요함.
- 사용자가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업무배정,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또는 고용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등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변경에 대한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4) 노동인권 영향평가 및 편향성 점검 의무 도입

- 개별 근로자는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집단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를 발견하고 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전고지, AI 단독 결정에 의한 불리한 처우 금지, 설명요구 및 사람에 의한 재검토 등 보호절차 외 자동화된 노동관리시스템 영향평가를 신설하도록 하여, 시스템 도입 전 차별 및 기본권 침해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함

5) 설명요구권과 사람에 의한 재검토의 실효성 강화

- AI에 의한 결정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AI 판단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재검토권을 실질화해야 함. 따라서 AI 결정에 사용된 주요 정보와 평가요소, 상대적 중요도 및 각 요소가 근로자에 관한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사람에 의한 재검토가 단순 확인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AI의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결정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194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함.
 -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 약평
- AI 시대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로기준법을 넘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합의' 또는 '단체교섭권 보장'이 명시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것임에도 단순한 의견청취 수준에 그치는 등 취지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기법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폐기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담당/문의 : 공익법센터 (02-723-0666, pil@pspd.org)

[입법과제8]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2026년 9월 현재 22대 국회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6개 발의되어 있음. 이 중 4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임.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바이오데이터 활용법이 1건 발의되어 있는데, 기존 공공기관 및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구목적 활용, 전송요구권,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제도적 측면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과 유사함.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소관 상임위
220513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	2024.10.31.	보건복지위원회
2214515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2025.11.24.	보건복지위원회
2214990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	2025.12.8.	산업통상위원회
2215436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송기현	2025.12.19.	산업통상위원회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최형두	2025.1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6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권철승	2026.6.3	보건복지위원회

6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0.	회
222079 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	2026.8.2 6.	보건복지위원회

- 안상훈, 서영석, 권철승,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본 골격은 거의 동일함.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의 변주인 것으로 보이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산업통상위원회 소관 2개의 법안(정태호, 김성원·송기현 의원안)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바이오데이터 활용법(조인철·최형두 의원안) 역시 초당적으로 발의되었고, 사실상 과기정통부안인 것으로 보임. 국민의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두고 세 부처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임.
- 산업통상부 소관 2개 법안 및 과기정통부 소관 1개 법안은 모두 환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진흥 부처가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어,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중복, 상충되어 오히려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디지털헬스케어 6개 법안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보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대다수 법안이 제1조 목적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 관련"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바이오데이터법은 ‘인공지능바이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보건의료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진흥이라는 큰 맥락에서는 동일함.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밀의료 활성화 등 산업 진흥도 포함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 플랫폼의 운영이나 데이터셋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정보사업에서 개인정보를 어떤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칫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특히, 안상훈 의원안의 경우

공공기관 및 병원으로부터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여 '보건의료정보 통합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바이오데이터법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바이오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인의료정보의 통합은 개인식별의 가능성을 높이고, 한번 유출될 경우 대량의 폭넓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어 그 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큼.

- 이 법안들은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 전송요구권,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인의료정보와 관련하여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어 법제간 중복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원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함. 서영석안·전진숙안·권철승안은 그나마 기본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연결하여 중복의 여지를 줄였지만, 전송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복의 여지가 존재하고, 정태호 의원안은 아예 발의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물론 기본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면서 개인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보호를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발의안들은 개인의료정보의 연구 목적 활용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신질환·유전질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사실상 동의 면제를 상시화하고 있음. 또한, 가명처리를 하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심지어 안상훈 의원안은 아예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음. 이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바이오데이터법 역시 법안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만으로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 법안들의 전송요구권 조항들은 「의료법」제21조제2항, 「약사법」제30조제3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2조제2항 등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진료기록, 조제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물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크패턴을 사용하여 동의가 형식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클릭 한번으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나 영리적 건강관리회사로 넘어갈 위험이 큼. 법안들은 관리전문기관의 금지행위로 정신질환자·장애인·장기기증자·HIV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금지 규정일 뿐이며, 민간보험사의 위험평가, 인수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될 가능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영리기업도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이 될 수 있고, 이들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보건의료정보가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와 통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음. 보건의료정보는 희귀질환·투약 이력·방문 패턴 등으로 특정이 쉬움. 유전정보는 그 자체가 고유식별정보여서 가명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유출되어도 바꿀 수 없고, 그 영향이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6년 영국 UK Biobank 대규모 의료정보 유출 사건과 잇따른 국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여주듯 의료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임.
- 안상훈, 서영석, 전진숙 의원안 등은 보건의료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음. 관계기관이 30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업무 지연이 곧 승인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배상하되 책임보험 가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건강 침해는 사후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음. 의료 서비스는 엄격한 사전 검증 이후에 허용되어야 함. 바이오데이터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법 상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를 연계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조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지만, 서영석 의원안 등은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 민감정보 처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3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음.
- 산업통상위원회 소관 2개 법안은 개인의료정보 오남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아예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기관과 바이오헬스산업계 인사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제되어 있음. 바이오데이터법 역시 아예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2. 세부 과제

- 1) 개인의료정보 특수성 반영한 보호 강화 입법과 공적 데이터 거버넌스가 우선될 것
- 7개 법안 모두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는 미흡하거나 배제하고 있어 폐기되어야 함.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료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 강화 입법과 공적 데이터 거버넌스임. 정부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공의료정책 수립 및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개인의료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리의 제한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함.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특례 조항은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는 바, 최소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함.
-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동의없는 활용은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연구 목적에 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과학적 연구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공익성이 있는 연구로 제한되어야 하며,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독립적인 심의기구에서 연구의 공익성,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의해야 하고, 연구결과는 공개되어야 함.

3)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관련

- 관리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업무를 한정하고, 자기 사업을 위한 이용, 분석, 제3자 제공, 결합을 금지해야 함.
- 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리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및 약평

1) [220513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외 9인)

- 주요 내용
 - 가장 먼저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정보사업)
- 개인의료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 규정.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본인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
-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
- 연구개발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 지정
- 약평
 - "통계작성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고,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영리 목적의 개인의료정보 활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관리전문기관'도 "정보주체 또는 보건의료정보처리자로부터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의료행위, 연구, 교육, 건강관리 등에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여, 자기 사업을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기관 및 병원으로부터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여 '보건의료정보 통합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
 - 「의료법」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 지원 정보시스템을 인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주체로 산업육성 부처인 산업통상부장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다른 법안의 경우에도 '국가'를 주체로 하고 있어 산업통상부장관 역시 포함될 가능성은 있음)
 - 전반적으로 다른 법안에 비해 더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함.

2) [2214515]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외 9인)

- 주요 내용
 - 기본적인 법안의 구조는 안상훈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개인의료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검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정책심의위원회에 5년 존속기한을 두고 있음(제7조 제7항).
- 약평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안의 중복 규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함.
- 그러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한 공통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 법안은 안상훈 안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면에서는 나으나 역시 의료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에 소홀히 함으로 폐기.

3) [2214990]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외 11인)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위 소관 법안 2건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개인건강정보, 디지털헬스 등 정의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임을 규정
 -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 산업통상부에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
 -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과학적 목적에 산업적 연구 목적 포함
 -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규정
 - 디지털헬스 우수기업 인증, 기금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 산업통상부 장관이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설립
- #### ● 약평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무력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요구에 배치됨.
 - 소관 부처를 산업육성 부처인 산업통상부로 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들에는 있었던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등에 의한 심의 규정,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규정 등이 없어, 사실상 개인의료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개인건강정보활용 전문기관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전문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정요건, 감독 및 제재 규정이 부재함.

- "개인건강정보의 수집, 연계, 저장, 가공, 분석, 제공, 공개 등의 행위에 관여한 주체들이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에 따른 성과물 또는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부여하고, 종합계획에 "개인건강정보의 가치 평가,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성과물 및 수익에 관한 정당한 배분 방안 수립 및 정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건강정보의 상품화를 유도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에 정보주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야 함. 이는 산업계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위원회가 보건의료 규제 입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 그나마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개인의료정보 보호체계 마련'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통상부 소관 법안은 노골적으로 산업 진흥만을 우선하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으로 폐기해야 함

4) [2215436]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송기현 외 8인)

- 주요 내용
 - 정태호 의원안과 기본적으로 유사함. 다만, 연구 목적 활용 및 개인건강정보활용 전문기관 규정은 제외.
 - 기술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 규정을 두고 있음.
- 약평
 - 'AI 바이오헬스서비스' 정의에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조제·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 AI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정책도 산업통상부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될 우려가 있음.
 - 정태호 의원안과 유사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I 바이오헬스기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정태호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둔 법안임.

5) [2219646]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철승 외 9인)

- 주요 내용

- 서영석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조항은 삭제함. 대신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관리 제도를 도입함.
- 진료·돌봄 등 1차 이용을 제외한 모든 이용을 '2차활용'으로 정의하고, 2차활용 지원기관을 설치함.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

- 약평

- 2차활용 지원기관 설치에 의해 개인의료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인 절차로 활성화될 우려가 있음.
- 사망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아님. 특히 유전정보를 포함하여 사망자 정보가 관련 유족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규율이 공백인 상황에서 사망자 정보의 2차 활용이 활성화될 위험이 있음.
- 2차 활용 기관의 업무로 '데이터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 정산 및 정보보유기관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촉진의 우려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소홀함.

6) [222079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외 9인)

- 주요 내용

-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는 서영석 의원안과 거의 동일함.
- 사회적 영향평가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범사업 참여자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등 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약평

- 사회적 영향평가 후 권고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강제성은 없어서 실효성에 있을지 의문임.

7)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최형두 의원 외 8인)

● 주요 내용

- 바이오데이터 등 개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바이오데이터 표준을 제정·시행,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공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등록과 활용 촉진
- 바이오데이터의 연구개발 촉진 및 보안대책 수립, 축적된 바이오데이터의 공개,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 연구개발 사업 지원, 선도사업 지정, 거점지구 및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운영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전송요구권 및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 규정
-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필요시 규제자유특구 및 실증특례 제도와 연계

● 약평

-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구조 : 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제9조), 데이터 공개(제10조), 보안지침(제13조), 그리고 생명윤리법 특례를 통합 심의하는「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제21조)까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위원 추천권만 가질 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됨. 연구개발 진흥을 임무로 하는 부처가 동시에 그 연구의 윤리적 적정성 심의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산업진흥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됨.
- 이 법률안 제4조는 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중복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과 바이오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보나 유전체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희귀질환이나 소수 사례의 경우 사전심의와 철저한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드러날 위험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가명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음. 통합·공개 구조는 5천만 국민의 민감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침해 시 회복 불가능한 단일 실패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음.

- 법안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생명윤리법상 심의(IRB)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는 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기관의 자율 책임성'과 상충하며, 신설 위원회는 연구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다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감독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행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음.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가명 바이오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의 연구 목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가명처리된 유전체정보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전체정보는 부모·형제·자녀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본인 동의"라는 틀만으로는 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법안은 규제 최소화를 국가의 노력 의무로 선언하고, 규제 발굴·개선을 별도로 두어 연구자에게 규제 개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 구조는 향후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완화대상'에 편입시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담당/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policy@digitaljustice.kr)

[국감정책과제1]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와 여당은 9월 중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정부는 이 법안에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담을 것이라고 알려짐.
-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AI라는 특정 기술을 예외로 삼아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 온 노동 및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아서 안 될 것임. 이런 전례는 향후 AI 뿐 아니라 또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규제 예외주의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특히 이 법안의 내용에는 고소득 관리자·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젼션'과 파견 확대를 비롯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음.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상충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제 완화의 내용이 메가특구를 명분으로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이미 산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메가특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영역에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결국 장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동권 및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 1) 정보 비공개 등 불투명성과 비민주적인 AI 예외주의
 -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에서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발표된 이후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음.

- 2026년 9월 4일 당정협의의 문서화된 내용이나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행규제를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노동자, 정보주체 등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임.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소재 지역의 주민에게는 소음, 전자파, 열섬 현상, 화재 위험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정부는 메가프로젝트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정보를 지금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메가프로젝트는 밀어붙이기식 신산업 유치로 넘어 공공이익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함.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2)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AI 예외주의

- 메가특구특별법은 소득 상위 3% 관리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짐. 더불어 파견 허용업종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등의 노동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메가특구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현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과로하게 만들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동의 요구는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매개로 한 강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오래된 전제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임.
- 무엇보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도달되어야 함. 메가특구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닐 것임. 메가특구특별법이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 입법될 경우 R&D 적용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둘러싼 소송, 근로시간 기록 완화에 따른 산재 입증 공백, 같은 사업장

내 처우 격차 등을 둘러싼 법리적 분쟁 또한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도 있음.

3)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AI 예외주의

-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력공급 방안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특히 정부는 시간이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신규 원전 건설보다 단기간 건설 가능한 LNG 발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듯 보임. 이 경우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용수 조달과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충분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함. 특히 그 유역의 주민은 어떤 논의를 거쳐 물을 나누게 될 것인지 아무런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함.
- 가장 큰 문제는 메가특구를 이유로 환경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임. 대통령은 7월 초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투자 속도전을 펼칠 것을 강조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음.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 책임을 부과해야 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환경적 안전장치마저 '신속 처리'라는 이름으로 무시된다면, 메가특구는 헌법이 미치지 않는 '성장의 치외법권 지역'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4. 소관 상임위/부처 : 국회 정무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

5. 담당/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policy@digitaljustice.kr)

[국감정책과제2]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의료 취약지 인력 부족과 응급실 미수용 사태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게임 체인저’로 의료 AI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의료 AI 기술은 통제된 연구 환경(벤치마크)에서만 높은 성능을 보일 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데이터 의존성과 허위 상관관계 학습, 상황·맥락적 이해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게임 체인저’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료 AI는 아직은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우회(선진입 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미검증 AI 기술의 의료 현장 진입을 부추기고 있음. 이는 환자를 미검증 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내몰면서 진료 명목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검증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해야만 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알고리즘의 명령과 부적절한 인력 배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이 때문에 정작 환자를 제대로 돌볼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함. 규제되지 않은 AI는 병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와 감시에만 유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와중에 정작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대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 ‘AI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공공병원 신·증축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음.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병원 설립이나 인력 확충이 아닌, AI 기업 지원에 정부 예산과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또한 의료 AI 등 디지털헬스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민감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상업적으로 넘기는 건강정보 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 등)가 추진되고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안전·효과 검증을 무시하는 AI 예외주의 재검토

- 의학의 근간은 안전성·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데 있음. 신의료기술평가 우회(선진입 제도)는 그런 기본적 원칙을 허물고 있음. AI도 다른 기술들과 다를 바 없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사전 검증되어야만 함.
- 선진입 제도가 도입되고 규제가 완화되어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AI를 명분으로 하면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더 심각해지고 있음. 결국 전체 보건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제도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
- 이런 규제완화는 기업에게는 무한한 수익추구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지만, 환자에게는 위험과 손실을 유발할 뿐임.
-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중단해야하고,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해야 함. 새로운 기술이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AI 기술은 다른 기술들보다 오히려 더 규제가 엄격해야 함. 그리고 AI는 상황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증을 업데이트해야 함.

2) 의료 AI 환상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재정 긴축 중단

- 의료 AI 산업 지원 예산은 증액되는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재난적 의료비 예산 감축,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미편성 등 공공 보건의료 재정은 축소되고 있음. AI가 아무리 잘 작동해도 현실의 인력과 병상을 대체할 수는 없음.
-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공공의료 인력의 공공적 양성·배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근본적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

3)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건강정보 민영화 중단

-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개인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일부 내용만 가려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환자 기록을 손쉽게 기업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바이오데이터법’ 등의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의료·건강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함.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 목적에 엄격히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의료정보 처리는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입법이 필요함.

4) 병원 내 노동자들과 환자를 위한 민주적 권리 보장

- 인공지능이 환자와 노동자에 대해 내린 결론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어떤 작동 원리에 의해 내려졌는지 설명을 듣고 해석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환자와 의료 노동자들은 자신의 질병이나 노동 및 인사평가 등과 관련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권리가 있어야 함.
-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들은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나 해고의 위협 없이 인공지능, 자동 임상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타 의료 정보기술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권리가 있어야 함.
- 의료 노동자는 AI 도입 관련 병원의 모든 정책, 절차에 대해 협의할 권리, 교섭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 노동자는 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동 관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권리가 있어야 함.

5) 인공지능기본법 상 보건의료 AI에 대한 실질적 규제 포함

- 인공지능기본법은 의료 부문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지만, 별다른 구체적 책무도, 엄격한 처벌 조항도 없음. 또 의료기관은 AI 기업과 함께 의료행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해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책무가 없음. 게다가 4등급 인공지능 의료기술만 ‘고영향’으로 분류하는데, 현행(’25년 9월까지) 기준 4등급 인공지능 의료기술은 존재하지 않음. 즉 인공지능기본법 상 보건의료 인공지능은 사실상 규제가 없음.
- 인공지능기본법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책무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는 대부분 ‘고영향’으로 분류해야 하며, 의료기관도 ‘고영향 AI’ 운용자로서 책무 이행 주체로 포함시켜야 함.

4. 소관 상임위/부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담당/문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healthforall21@gmail.com)

[국감정책과제3]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

I.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따른 여성 고용·노동환경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과 채용 플랫폼에서 AI를 활용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분석, 지원자 선별, AI면접 등 채용과정에서의 AI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채용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남성이 많이 뽑힌 직무의 특징을 ‘좋은 지원자의 특징’을 학습하여 경력단절과 돌봄 등으로 경력 공백이나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 경험 많은 사람의 이력서를 채용 및 승진 등에 불리하게 학습할 우려가 큼. 기존 채용 데이터에 내재된 기존 차별과 편향,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구제수단이 미흡함.
- 사무·지원·보조 직무(콜센터 상담, 데이터 입력, 경리·회계보조, 비서 등) 등 여성 집중 직종의 자동화 등 AI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와 직무 변화는 성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생함.
- 채용·업무배치·성과평가·노동감시 등 고용관계에서의 AI활용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등 권리보장이 미흡함.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5만개 줄었으며, 그 중 26.8만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사라짐. AI가 자료검색·문서 정리 및 작성 등 신입·저연차 노동자가 담당해온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여성, 그리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시도하는 여성들에게는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사다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웹툰 어시스턴트의 약 70.9%가 여성이고, 29세 이하가 66%임. 이 노동은 단순 보조업무가 아니라 창작경험과 기술을 쌓고 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진입경로였음. 웹툰·웹소설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창작노동에서 콘티·밑그림·채색·배경작업 등을 AI로 대체하면서 외주와 보조 노동 발주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여성의 창작노동시장 진입과 숙련 형성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따른 여성 노동권 보호체계 마련 필요

- 채용·모집과정부터 업무/성과 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AI 활용의 성별 편향 및 기존 차별의 재생산 여부 점검 필요.
- AI 도입에 따른 여성 집중 직종의 신규채용 규모, 업무량, 직무 변화, 고용형태 변화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마련.
- 신규채용, 신입·저연차 일자리, 직무 및 숙련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여성·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 AI도입에 따른 노동권 보호, 차별금지, 투명성, 인간의 개입 가능성, 설명 가능성, 노동시장 영향 고려 등을 위한 기본 원칙 마련 및 개별 노동관계법과의 연계한 법개정 검토 필요.

3. 소관 상임위/부처 :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I. 성폭력 사건의 수사,조사,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AI활용에 따른 젠더 편향과 피해자 권리 침해

1. 현황과 문제점

- 경찰·법원 등 수사·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속의 과정 없이 AI 활용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 경찰청은 2025년 4월부터 KICS를 통해 모든 사건에 AI음성인식 조서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조사¹는 2020년부터 해당 기술이 활용되어 왔음.
-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음성 데이터는 시스템 인식을 향상 및 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서 활용 동의서 문구에

¹ <https://theindigo.co.kr/archives/7711>

어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음성·진술 등의 데이터가 AI 연구 및 기술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AI 젠더 편향과 오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내재된 성별 고정관념이나 젠더 편향이 수사, 조사,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재생산되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 상황이 왜곡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 1) 성폭력 사건의 수사, 조사,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AI활용에 따른 젠더 편향 및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수사, 사법 과정에서 AI활용에 대한 투명성 및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AI활용의 성평등·인권 기준 및 피해자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

3. 소관 상임위/부처 :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II. 보건의료·복지·돌봄 분야의 편향, 오류 및 권리침해

1. 현황과 문제점

- 의료·복지·돌봄 분야에서 진단·건강관리, 복지 대상자 선별·위험탐지, 민원상담, 돌봄서비스 등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료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의료 시스템의 성별·집단별 편향을 학습하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진단이나 예측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 환경에서 검증된 AI 성능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는 등 AI의 오류와 한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²

- 정부가 한국형 의료 AI 확습을 위해 국가보건의료데이터와 바이오데이터의 결합·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전체·진료기록·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결합·활용 및 재식별·유출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통제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필요함. 특히 여성의 재생산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대한민국 출산지도’와 같이 성차별 정책이나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복지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대상자 선별·위험 탐지·민원 상담 등의 확대, 돌봄 분야에서는 AI 건강 점검과 말벗 서비스 등 돌봄 로봇 도입과 AI 기반 돌봄시설 구축 등이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을 하면서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총원 등의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돌봄로봇의 관리·보조에 추가 노동이 발생하거나 관계적 돌봄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현장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 1) 보건의료·복지·돌봄 분야 AI 도입에 따른 편향 제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필요
 - 의료·복지 분야에서의 편향·오류에 대한 검증 및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바이오데이터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돌봄의 질, 돌봄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
 - 의료·복지·돌봄 분야 AI 도입 시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이용자 권리, 성평등, 돌봄의 공공성 및 노동권을 고려하는 기준 마련

3. 소관 상임위/부처 :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²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503>

IV. AI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확대 및 디지털 성폭력·성착취 확산

1. 현황과 문제점

- 생성형 AI를 이용해 여성·아동청소년의 사진이나 SNS이미지를 성적 이미지·영상으로 변형·합성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를 변형하여 광고·홍보에 재사용하는 등 동의 없는 성적이미지의 제작·유포·상품화가 확대·재생산됨.
- AI를 활용한 성매매 광고·프로필·홍보 콘텐츠의 대량 생산, 챗봇을 통한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유인과 그루밍, 온라인 활동을 분석한 개인화된 접근 등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사람이 수행하던 광고·알선·모집·유인의 대량화·자동화·개인화·저비용화되면서 성착취 목적의 모집·유인 규모와 정교함이 커질 위험.
- SNS·콘텐츠 플랫폼의 추천·수익화 구조와 AI가 결합하면서 성매매 경험담·유흥업소 홍보 등 성산업 관련 콘텐츠가 일반적인 정보·오락 콘텐츠의 형태로 생산·유통되고 성매매 광고와 일반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기존 성산업에 대한 노출과 접근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AI를 이용한 이미지·음성의 합성·편집·생성으로 성적 요소가 포함된 허위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적요소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음성 등을 변형하여 성적대상화하거나 젠더 규범 위반을 이유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의 형태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³.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의 탐지·삭제지원·수사 등에 AI를 도입하여 정부DB에 수집된 디지털 성폭력 피해영상 등을 판별하는 데 활용됨. 그러나 AI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나 성별 고정관념, 음란성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성착취 확산 및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마련

³ <https://v.daum.net/v/BxNQUUQ9yd>

- 생성형 AI 및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성매매·성착취의 대량화·자동화·개인화 및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유인·착취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디지털 성폭력 피해 탐지·삭제지원·수사 등에 AI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
- AI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폭력 피해 콘텐츠 탐지 및 분류 시 판단기준, 학습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3. 소관 상임위/부처 :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담당/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s_rights@women21.or.kr)

AI시민행동 입법/정책 자료집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 예외주의 반대

22대 후반기 국회에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

발행일 2026. 9. 17.

발행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 AI시민행동)

담 당 AI시민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pil@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소개
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